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화도디씨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 1인
3. 판결·결정내용	피고(당사 및 시설관리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물류센터 냉동기 사고로 인한 임차인 물적피해 손해배상금 216,000,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
4. 판결·결정사유	판결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4년 8월 23일
7. 확인일자	2024년 8월 2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와 공동피고 사이의 계약조건에 의거 공동피고와 책임비율 협의 예정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